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19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 박상혁 · 이해식 · 박희승

정일영 · 한민수 · 이연희

한준호 • 허 영 • 김주영

박균택 • 이정문 • 김용만

의원(12인)

제안이유

국민 생활 곳곳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드론·로봇·자율주행차 등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으나,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 규율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데이터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영상관제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 다중이용시설 IP카메라 보안인증 의무화 등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모두 규율할 수 없고 세 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나 현재 법령 체계로는 종합적으로 규율하 기 어려움.

이에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법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다 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 의 기본권과 생활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안 제2조제1항제1호)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이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기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각각 분류하여 정의함.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안 제3조)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함.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예방 등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군사시설·국가중요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 촬영에 관한 안내판을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상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방침 마련,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관리 및 처리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 도록 함.

-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 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과 교 육 등 관제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당초 촬영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서 영상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상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및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고 영상정보주체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아.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보장 등(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영상정보주체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발급, 보관, 정정, 처리의 전부・일부 정지 또는 삭제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수 있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법률에 따라 열람 등이 금지・제한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열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자. 금지행위(안 제27조)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

하거나 멸실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함.

차. 벌칙(안 제35조)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 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 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 또 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 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 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 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 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 2. "개인영상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영상정보로서 다음 각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살아 있는 개인 또는 그 개인과 관련한사물을 촬영한 영상 형태의 정보로서 초상, 형태, 행동 등을 통하여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3. "영상정보주체"란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개인영상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다만,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부착한 자동차의 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영상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부당 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를 그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영상정보주체의 행동에 간섭하거나 관찰할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변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 또는 절차 등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권리 침해 가능성 또는 그 위험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는 제2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촬영 또는 제공 요 청되는 개인영상정보
 - 2.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 · 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

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촬영·이용하는 개인영상정보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
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제3항,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자신의 영업 장소나 사무소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설치·운용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 용자 또는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매개(媒 介)하는 경우에는 제4장, 제6장 및 제7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용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 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용하는 경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용하는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가 설치·운용하는 경우

- 6.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기록·저장·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된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 공공 장소, 도로 등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 는 장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이 본인의사유지에 주거의 안전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적 목적으로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 3.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 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상정보주체에 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설치ㆍ촬영 목적 및 장소

- 2. 촬영 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4. 개인영상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⑤ 누구든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공공기관은 제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또는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제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자는 영상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

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설치・촬영 목적 및 장소
- 2. 촬영 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설치 방법과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 조작 등 제한) ① 개인영상정 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그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해 서는 아니 된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급박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한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

- 제9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 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10조에 따라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영상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운용·촬영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 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여 개 인영상정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촬영 사실의 표시 등)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9조제1항 각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 명이로 정하는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목적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또는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개인 영상정보가 촬영될 때 불빛, 소리 등을 통하여 촬영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등

제11조(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 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 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 시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대상 시설과 보안인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방침)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용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 1. 제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 서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2.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운용하는 이동형 영 상정보처리기기 중 공공기관이 조사·단속 및 재해·재난 대응 등 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방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촬영 목적, 보유 대수, 촬영 장소 및 촬영 범위
- 3.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유 기간, 보유 장소 및 처리 방법
- 4.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 5.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 6.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 7. 영상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절차 및 방법
- 8. 관리책임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9.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가 쉽게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관리 방침의 내용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와 영상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관리 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① 개인영 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4.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관리)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촬

- 영, 이용, 제공, 공개, 열람, 삭제, 파기, 접속기록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1. 이력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 2. 이력사항을 위조 · 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3.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
- ③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 점검)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제7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단서의 시설에서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공공기관의장은 매년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용 및 관리 현황
 - 2. 개인영상정보의 촬영·보유·이용 및 제공 등 처리 현황
 - 3. 영상정보주체의 열람 등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② 공공기관 외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용하는 자는 매년 개 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고, 제1항제1호의 사 항이 포함된 점검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 점검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등

-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개인영상정보 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관제하는 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 려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권고할수 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과 촬영 범위, 시간 등에 대한 일부 제한
 - 2.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등의 이행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 (공공기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 4.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와 설치·운용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내용 등에 따라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권고 받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자체 평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권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제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 토킹범죄
- 7.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② 관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관제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관제시설 내 개인영상정보의 적정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제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8조(공공기관의 관제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① 공공기관은 관제시설을 설치하거나 관제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또는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관제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방침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1. 관제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 설치 목적 위치 및 수량
- 2.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의 종류와 처리 방법
- 3.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4. 관리책임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
- 5.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 6. 영상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절차 및 방법
- ③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의 관제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업무에 필요한 예산 또는 인력 등을 분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건·사고 또는 재난 상황의 감지 및 전파, 범죄피해자 수색 지원 등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관제시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예산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관제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영 상정보의 처리 절차, 관제업무 종사자 교육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 제19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및 같 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촬영 목적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 촬영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영상정보주체에게 부당한 권리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명처리 등의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 적 조치를 통하여 영상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경우. 이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제공의 목적과 내용, 영상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20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 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 본다.
- 제21조(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의무) ① 개인영상 정보처리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 상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목적 및 방법의 제 한, 파기 기한의 설정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 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 1. 영상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장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 보장

제22조(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요구) ① 영상정보주체 및 개인영상정

보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영상정보주체등"이라한다)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출처확인, 사본의 발급, 보관, 정정, 처리의 전부·일부 정지 또는 삭제(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2.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등 법령 등에 의하여 영상정보주체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행사를 대리하는 자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영상정보주체등은 제1항에 따라 열람등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조치 등)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2 2조제1항에 따라 열람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내에 열람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 보처리자가 한 열람등의 조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성립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열람등의 요구를 받

있을 때에는 열람등의 요구를 한 자가 영상정보주체등에 해당하는 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22조제3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주체등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즉시 열람등을 요구하는 등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따르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열람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열람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상정보주체등에게 열람등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등에게 열람등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4. 열람등의 요구가 영상정보주체등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영상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 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영상정 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⑥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열람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제4항에 따라 열람등을 연기하거나 제5항에 따라 열람등을 제한・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지체 없이 영상정보주체등에게 알려야 한다.
- ⑦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주체등이 열람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및 열람등의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 제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영상정보주체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
- ⑧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열람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영상정보주체등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열람등의 연기, 제한, 거절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열람등의 조치 방법)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23조에 따른 열람등의 조치 중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열람등을 요구한 자 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기술적 조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2. 열람을 요구한 목적에 비추어 기술적 조치가 부적절한 경우
- 3. 그 밖에 기술적 조치를 할 필요가 없거나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주체등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열람등의 조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 영상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면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영 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영 상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영

상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5. 위반행위의 기간 · 횟수 등
- 6.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 7.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분실·도난 ·유출 후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 8.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제26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 주체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영상정 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 정할 수 있다.

③ 제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영상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이 조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 제27조(금지행위)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 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하는 행위
 - 4.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 개인영상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해당 기술적·관리적 및 물 리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제2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 2.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제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
 - 3.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업무
- 제29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2. 이 법 위반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3. 그 밖에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영상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

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 자료 등을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영업비밀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되었다고 판단할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 1. 개인영상정보 침해 행위의 중지
 - 2.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 3.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

-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 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31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30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및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연차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현황 및 개인영 상정보 보호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용 및 관리 현황
- 2. 관제시설의 운영현황
- 3. 영상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 4.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 5.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 6. 개인영상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 7.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시 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 제3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전문기관은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시·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있다.
-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보호위원회가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제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영 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 2.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

보를 제공받은 자

- 3.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를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그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한 자
- 2. 제27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 3. 제27조제4호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 개인영상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해 당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
- 4. 제2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 또는 제1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기술적 · 관리적 및 물

- 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시킨 자
- 2. 제23조를 위반하여 정정, 처리의 전부·일부 정지 또는 삭제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영상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개인 영상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몰수·추징 등) 제35조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 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 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한 자

- 2. 영상정보주체에게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한 자
- 3.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 치하거나 이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한 자
-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여 개 인영상정보를 촬영한 자
-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4항 또는 제20조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제2호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의 목적과 내용, 영상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자
- 4.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주체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등의 요구를 한자

- 5.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주체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상정보주체등이 아닌 자에게 열람등의 조치를 한자
- 6.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등을 연기·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한 자
- 8.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관리 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 7.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력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나. 이력사항을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다.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자
- 8.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주체등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9.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보안인증을 받은 네트워크카메라가 최초로 설치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인영상정보 처리 현황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관제시설 자체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관제시설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영상정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용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처리된 개인영상정보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운용되거나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7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용·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보호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